

# 정 관

# 정 관

1964년 7월 6일 제정  
1972년 2월 29일 개정  
1973년 2월 28일 개정  
1975년 2월 26일 개정  
1976년 2월 27일 개정  
1978년 2월 28일 개정  
1980년 4월 4일 개정  
1981년 4월 2일 개정  
1983년 3월 28일 개정  
1985년 4월 25일 개정  
1986년 5월 24일 개정  
1987년 3월 17일 개정  
1989년 3월 20일 개정  
1991년 4월 2일 개정  
1993년 5월 1일 개정  
1997년 4월 4일 개정  
1999년 3월 26일 개정  
2002년 3월 19일 개정  
2005년 3월 31일 개정  
2006년 3월 27일 개정  
2008년 3월 26일 개정  
2011년 6월 10일 개정  
2011년 11월 17일 개정  
2012년 1월 13일 개정  
2013년 3월 13일 개정  
2014년 3월 26일 개정  
2014년 9월 24일 개정  
2015년 2월 5일 개정  
2016년 3월 29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79에 둔다.<개정 2016.3.29.>

**제3조(목적)** 협회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업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개정 2013.3.13.>

1.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연구·홍보 및 기술지도<개정 2011.11.17.>
2.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훈련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개정 2013.3.13, 2015.2.5.>
3. 산업보건에 관한 제도개선 및 입법추진 건의
4. 산업보건에 관한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업
5. 회원의 활동 지원<개정 2015.2.5.>
6. 국제적 산업보건 관련기관과의 국제협력과 학술 교류
7. 건강관리와 증진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 사업
  - 2) 『의료법』에 의한 진료, 치과진료 및 검사
  - 3)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
  - 4) 기타 보건관련법에 의한 건강진단 사업
8. 『혈액관리법』과 관련된 혈액관리 사업
9. 작업장(사무실 및 공중이용시설 포함) 내·외의 유해환경 및 인자에 대한 조사·진단·평가 및 개선지도
10.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과 관계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사업  
<개정 2011.6.10.>
11. 석면 관련 조사·측정 및 교육·연구사업<개정 2011.6.10.>
1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개정 2011.6.10.>
13. 산업보건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 및 재정지원
14. 연수 및 그 부속 숙박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5. 주민의 건강영향평가 등 주민의 건강관리 사업<신설 2015.2.5.>
16. 그 밖의 환경, 보건, 의료 지원사업<개정 2011.6.10, 2015.2.5>

**제5조(지부설치)**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6조(제규정)** 본부와 지부 및 산하기관의 운영 등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7조(회원)** ①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3년 이상 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간호사
    -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관리기술사·대기환경(산업)기사·인간공학기술사·인간공학기사
    - 라. 「자격기본법」에 따른 운동처방사·심리치료사·심리상담사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지도사
  3.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산업보건을 조사·연구하는 자 및 산업보건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4. 산업보건 전문기관에서 산업보건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개정 2016.3.29.]

**제8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입회신청과 동시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협회에 등록됨으로서 취득한다. 단,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할 경우에는 해당 지부 평의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삭제 2014.3.26>

- ②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학술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회원은 협회의 사업에서 얻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회비)**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입금
2. 회 비

**제11조(제명)** ① 회원으로서 정관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협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명 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회비를 계속해서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협회를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전1항에 따라 제명된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10>

**제12조(퇴회)** 회원으로서 퇴회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탈퇴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수된 회비는 납부회비의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한다.

### 제 3 장 임원 및 대의원

**제13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수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4. 3.26>

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개정 2014. 3.26>

3. 상임이사 : 3명(기획관리이사, 사업총괄이사, 교육홍보이사)<개정 2014. 3.26>

4. 비상임이사 : 14명 이내<신설 2014. 3.26>

5. 상임감사 : 1명<개정 2014. 3.26>

② <삭제 2014.3.26>

③ 제1항제1호의 회장과 제3호의 상임이사 및 제5호 상임감사는 상근으로 한다.<신설 2014.3.26>

④ 제1항제2호의 부회장은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14.3.26>

⑤ 제1항제4호의 비상임이사는 대학교수,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및 보건관련 단체의 임·직원 중 산업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신설 2014.3.26>

**제13조의2(임원선출)**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하고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임원 정족수의 1/3 미만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6.]

**제13조의3(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되, 비상임이사 3명 이내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학계, 산업보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협회 구성원 과반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6.]

**제13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14.3.26.]

**제14조(회장)**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직을 대행한다.

② <삭제 2014.3.26.>

③ <삭제 2014.3.26.>

**제16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업무를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 감사는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

1. 법인재산상황의 감사
2.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것이 발견될 시는 이를 총회와 감독관청(주무관청)에 보고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소집요구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2013.3.13., 2014.3.26.>

②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선출된 날의 다음 달 1일로 한다. 다만, 보선 임원의 경우에는 보선 즉시 임무를 개시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3.26>

③ 불가피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4.3.26>

**제19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한도는 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개정 2014.3.26>

② 비상임이사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수당 및 여비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3.26>

**제20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대의원: 임원·지부장(다만, 회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

2. 대의원은 지부별로 회원 10명당 1명으로 선출한다.

③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제1호 및 제3호는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회의 운영은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9.]

**제21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3.29.]

**제22조(명예회장 및 고문 등)** ① 협회에 명예회장 1명과 약간 명의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협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③ 고문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 자문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12.1.13>

## 제 4 장 총 회

**제23조(구성 및 구분)**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10, 2014.3.26>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4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에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1.11.17>

② 이사회나 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통지)** 회장은 총회개최 1주일전에 회의에 목적으로 하는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개회 및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직접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6.10., 2016.3.29>

② 정관개정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6조의2(회원의 의결권 및 위임)** ①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총회개최통지문과 함께 배포된 서면 위임장에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을 위임자로 지정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총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3.29.]

**제27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제29조제1호에 본인이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17.>

② 의장은 의결에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9.>

**제28조(안건)** ① 총회는 제25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출석회원의 찬동을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총회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과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사항
7.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제30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총회에 출석한 회원 2인이 서명날인한 것을 보존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이 사 회

**제31조(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혹은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2조(개회 및 의결)**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장)** ①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다만, 제34조제9호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17>

② 의장은 의결에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3.29.>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2. 지부장 인준 또는 취소<개정 2014.3.26>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8. 채무부담 및 일시차입금에 관한 사항
9.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11.6.10, 2014.3.26>
10. 임원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4.3.26>
11.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2. 지부 및 산하기관의 설치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4.3.26>
14. 회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3.26>

**제35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의결사항은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장 및 출석한 이사 2인이 서명날인한 것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실행이사)** <삭제 2014.3.26>

## 제 6 장 위 원 회

**제37조(위원회 등)** 본회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38조(위촉)**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의 위원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3.3.13>

## 제 7 장 학 술 대 회

**제39조(학술대회)** ① 협회는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연구고취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② 협회는 국내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 8 장 집 행 기 구

**제40조(집행기구)** <삭제 2014.3.26>

**제41조(집행부서)** ①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지부에 필요한 기구 및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구 및 정원은 직제로 정한다.

**제42조(산업보건센터 및 의료기관의 설치)** ① 제3조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별 지역에 본부 산하의 산업보건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11.6.10>

② 본부 및 산업보건센터는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제43조(지원)** ① 본부와 그 산하기관은 회원 및 기업주에게 기술, 연구 자료, 시설, 인력 등을 지원한다.

② 산업보건센터는 관련대학의 학술 및 기술지원을 받아 연구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44조(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가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할 부동산 및 주요동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본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충당한다.

1. 회 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조사연구비
5. 대행 및 위탁수수료
6. 기 타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5조(예치)** 협회 재산중 현금은 우편관서나 시중은행에 예치한다.

**제46조(회계년도)** 협회의 사업 및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47조(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회

장이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총회의 승인을 얻기 어려운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회장이 집행하고 차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결산)** 협회는 사업실적과 수입·지출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은 뒤 다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13>

## 제 10 장 해 산

**제49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개정 2014.3.26>

**제50조(청산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이사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1조(재산처리)** 해산할 경우에는 협회의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80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잔여재산의 귀속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16.3.29.>

**제5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1983.03.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5.04.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6.05.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9.03.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4.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5.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4.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정관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03.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3.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3.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6.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7조 규정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부 칙 <2011.11.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정관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01.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3.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9.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종전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6.12.31.까지로 한다.

부 칙 <2015.02.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3.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